

의안 번호	2339	【울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9. 30.(목)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4. 9. 30.(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4. 10. 14.(월)

2. 제안설명 요지 (기획예산실장 민병률)

가. 제안이유

- 행정의 전문화·다양화로 업무 수행시 종합적 법률 해석이 요구되는 자문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률 자문 인력을 확충하여 활용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안 제2조)
 - 고문변호사 ‘3명’ 이내 → ‘5명’ 이내

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명주)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업무 수행시 전문적 법률 해석이 요구되는 자문과 소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법률 자문 인력을 확충·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8., 2024. 1. 9.>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